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심윤섭 소유물건(2025타경63768)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경매1계)

감정평가서번호: 20250729-068LA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밝히다, 신뢰를 더하다

한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HANBI APPRAISAL OFFICE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현표

이현표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일백만원정(W191,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심윤섭 (2025타경6376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09	2025.08.09	2025.08.11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다세대주택	1세대	다세대주택	1세대	-	191,000,000
		이하	여백			
합계					₩191,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파주대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프라임주택' 제101동 제2층 제201호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30-52]							
건물명 동호수	프라임주택 제101동 제2층 제2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붕					층수	사용승인일자	
						지상4층	2016.05.27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전용율 (%)	대지권 면적 (㎡)	용도	
기호	동/호수						공부	현황
1	제101동 제201호	64.26	5.46	69.72	92.17	70.25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8월 09일]로 하였음.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년 08월 09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교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 1)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별지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음.
- 2)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표준적 이용상황, 유사건물 탐문조사 등을 참조하였음.
-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보증금 '금192,000,000원', 임차권자 '어영준'으로 주택임차권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미상임.
- 4) 본건 지하층에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세대별 창고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사례 선정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구분	소재지	건물명/동	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단가 (원/㎡)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대원리 OO-OO	OO 100동	3/300	64.26	3,112,356	200,000,000	2023.03.20
							2016.05.27
B	대원리 OO-OO	OO	4/400	60.41	3,972,852	240,000,000	2025.04.30
							2019.10.04
C	대원리 377-4	프라임주택 101동	2/201호 (본건)	64.26	2,987,862	192,000,000	2022.04.09
							2016.05.27

* 대상 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 A>를 선정함.

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1)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경기 경의권)

[출처 :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3.02(사례)	2025.06(대상)	변동률(%)	비 고
104.6	99.7	0.95315	99.7 / 104.6

2) 시점수정치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며, 본건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서, 본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경기 경의권)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0.95315).

4. 가치형성요인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 분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 호	동/호수					
1	제101동 제201호	1.00	1.00	1.00	1.00	1.000

의 견

단지외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A 대비, 단지외부요인 유사함.
단지내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A 대비, 단지내부요인 유사함.
호별요인	본건은 거래사례A 대비, 호별요인 유사함.
기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A 대비, 기타요인 유사함.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비교사례 거래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 단가 (원/㎡)	대상 전유 면적 (㎡)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기 호	동/호수								
1	제101동 제201호	3,112,356	1.000	0.95315	1.000	2,966,542	64.26	190,629,989	191,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참고가격 자료

1. 시세수준

구 분	시 세 수 준
본건 유사 부동산	층, 향, 조망, 구조 등에 따라 가격차이 있으며 본건 다세대주택 유사 면적 기준 약 2,000,000원/m ² ~ 3,000,000원/m ² 내외 수준으로 파악됨.

2. 인근 유사 부동산 감정평가전례

[출처 : 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동	전유면적 (m ²)	전유면적기준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 (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층/호수					사용승인일
가	대원리 OO-OO	OO	64.26	2,972,300	191,000,000	법원 경매	2025.03.17
		1/100호					2016.05.27
나	대원리 OO-OO	OO	60.41	3,691,442	223,000,000	법원 경매	2025.05.22
		3/300호					2019.10.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전유면적 (㎡)	전유면적기준 결정단가 (원/㎡)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동/호수				
1	제101동 제201호	64.26	2,966,542	190,629,989	191,000,000

2. 시산가액의 검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감정평가전례),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프라임 주택 제101동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30-52			1층	139.44			
				2층	139.44			
				3층	139.44			
				4층	139.44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대	계획관리지역	1,124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1호	64.26	64.26	191,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포함
				1) 소유권대지권	70.25			
					-----	70.25		
					1,124			
	합 계						₩191,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파주대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중 제2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01-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6)(대원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본건 지하층에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세대별 창고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보증금 '금192,000,000원', 임차권자 '어영준'으로 주택임차권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임대내역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프라임주택 101동 2층 201호
------------	--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프라임주택 101동 2층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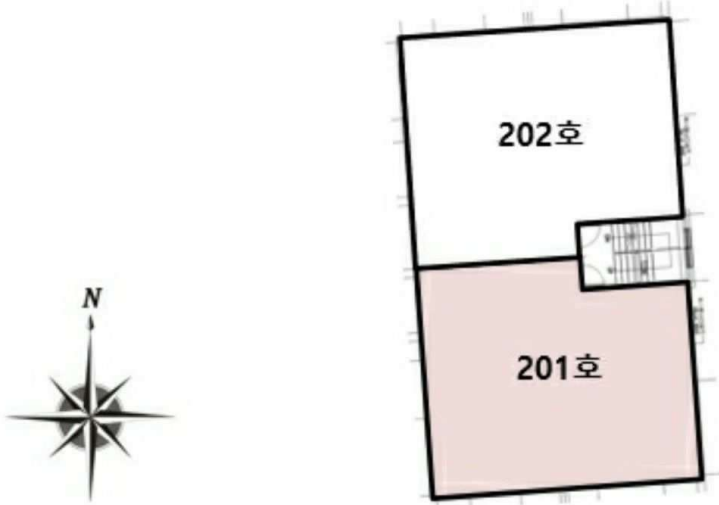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77-4 프라임주택 101동 2층 201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남동측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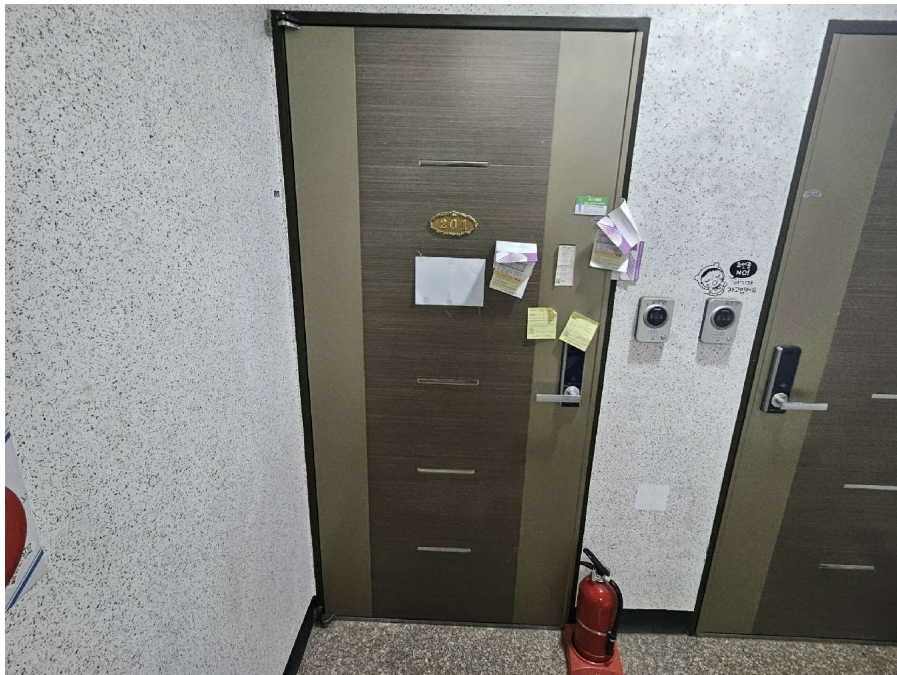


본건 전경
(남서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공동현관문



현관문

사 진 용 지



지하층



지하 창고